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3명, 7급 1명) 중 11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신산업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중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제조·건설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5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신속한 약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에 서비스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카르텔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제조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밑에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이 분장하던 경제분석 업무를 조사관리관으로 이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밑에 부당한 공동행위 안전의 신속한 심리·의결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하도급·가맹 등 관련 안전에 대한 심리·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및 소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사관리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표시·광고 분야 조사 기능 및 기업집단 정보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표시광고감시팀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27일에서 2028년 5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또는 5급 정원과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5급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20명(5급 13명, 6급 3명, 7급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6.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심판총괄담당관·경쟁심판담당관·기업거래심판담당관·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을 “심판총괄담당관·경쟁심판담당관·카르텔심판담당관·기업거래심판담당관·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한다)”를 “한다)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
7.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8.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관련 회의록의

작성

⑤ 카르텔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1.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제6조의3제2항 중 “조사총괄담당관 및”을 “조사총괄담당관·경제분석담당관·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으로, “조사총괄담당관은”을 “각 담당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 14. 삭제

④ 경제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경제분석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5.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시 경제분석과 평가

6.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
8. 주요 산업·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2. 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3. 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운영
4. 전자적 증거의 관리
5.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

제11조제2항 중 “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지식산업감시과·약관특수거래과 및 전자거래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제조업감시과장·약관특수거래과장”을 “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지식산업감시과·약관특수거래과·전자거래감시과 및 표시광고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제조업감시과장·약관특수거래과장·전자거래감시과장”으로, “전자거래감시팀장”을 “표시광고감시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거래감시팀장”을 “전자거래감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표시광고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제12조제2항 중 “제조카르텔조사과·입찰담합조사과·국제카르텔조사과·경제분석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을”을 “제조카르텔조사과·입찰담합조사과·국제카르텔조사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과를”로, “보하고,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을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기업집단관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을 “기업집단관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을”로, “서기관”을 “서기관으로,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제7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보험회사·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⑦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지배구조·내부거래·상표권사용거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2. 대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의 운영·관리
3.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관련 지표의 개발
4. 지주회사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5. 대기업집단·지주회사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하며, 가맹유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가맹유통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거래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보좌한다.
- ④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하도급조사과·기술유통조사과·신산업하

도급조사와 · 기업결합과 · 국제기업결합과 · 가맹거래조사와 · 유통거래조사와 및 대리점거래조사와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제11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을 “유통거래조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대규모유통업 · 대리점사업거래”를 각각 “대규모유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맹거래조사팀장”을 “가맹거래조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으로 한다.

1.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⑫ 대리점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리점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

반사향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제14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1명(6급 9명, 7급 12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5명, 4급 2명, 5급 10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별표 2 중 총계 “484”를 “599”로, 일반직 계 “481”을 “596”으로, 고위공무원단 “12”를 “13”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1”을 “38”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을 “47”로,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75”를 “234”로,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30”을 “162”로,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43”을 “55”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484”를 “599”로, 일반직 계 “481”을 “596”으로, 고위공무원단 “12”를 “13”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1”을 “38”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을 “47”로,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82”를 “241”로,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23”을 “155”로,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43”을 “55”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53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0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87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총리령 제194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7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88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총리령 제195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중 “2026년 5월 27일”을 “2028년 5월 27일”로, “2026년 5월 28일”을 “2028년 5월 28일”로 한다.

총리령 제188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표시광고감시팀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표시광고감시팀장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표시광고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이,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업집단관리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9조 관련)

1.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조사관리관	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심판관리관 카르텔심판담당관	10명 (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2명)	2028년 3월 31일까지
조사관리관 디지털포렌식담당관	10명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2028년 3월 31일까지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과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유통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대리점거래조사과	1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신산업하도급조사과	8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1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1명)	2028년 3월 31일까지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 및 민원 처리 업무	45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	2028년 3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판관리관) ① (생략)	제6조(심판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심판관리관 밑에 <u>심판총괄담당관 · 경쟁심판담당관 · 기업거래심판담당관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u> 및 <u>송무담당관</u> 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u>심판총괄담당관 · 경쟁심판담당관 · 카르텔심판담당관 · 기업거래심판담당관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1. ----- ----- ----- 한다) 중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u>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u>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

<u>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u> <u>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u> <u>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u>	<u>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u> <u>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u> <u>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u> <u>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u>
--	--

6.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 · 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u> 7.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u> 8.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회의록의 작성</u>	<u>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 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u> 6.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 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 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 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 · 분석과 심결 사례집의 발간</u> 7.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 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 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 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관련 사전심사청 구의 검토</u> 8. <u>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 른 위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 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u>
--	---

<신 설>

⑤ ~ ⑦ (생 략)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생 략)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두며, 조사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

반행위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 관련 회의록의
작성

⑤ 카르텔심판담당관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
한다.

1.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같
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
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
위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보
고서의 검토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중 같
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
반행위 관련 안건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
위 관련 안건에 대한 제4항제
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조사총괄담당
관 · 경제분석담당관 · 디지털포
렌식담당관 및 ----- 각
담당관은 -----

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 9. (생략)

10.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11. 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12. 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운영

13. 전자적 증거의 관리

14.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신설>

--.

③ -----

--.

1. ~ 9. (현행과 같음)

10. ~ 1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④ 경제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신 설>

경제분석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
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5.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 ·
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 ·
개정 시 경제분석과 평가
 6.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
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7.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 · 개발 및 전파
 8. 주요 산업 · 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
사
- 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
좌한다.
1.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
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2. 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 개발
 3. 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 · 운영
 4. 전자적 증거의 관리

④ (생 략)

제11조(시장감시국) ① (생 략)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 · 제조업감시과 · 지식산업감시과 · 약관특수거래과 및 전자거래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 · 제조업감시과장 ·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 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표시 ·

5. 전자적 증거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 훈련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시장감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비스업감시과 · 제조업감시과 · 지식산업감시과 · 약관특수거래과 · 전자거래감시과 및 표시광고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 · 제조업감시과장 · 약관특수거래과장 · 전자거래감시과장-----

----- 표시광고감시팀장-----

-----.

③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 · 공개 및 임시중지명령
제의 운용

8. (생략)

④ 제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제조업 분야에서의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제조업 분야에서의 표시 · 광
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 · 공개 및 임시중지명령
제의 운용

⑤ · ⑥ (생략)

⑦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8.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자거래감시과장-----
-----.

1. ~ 7. (현행과 같음)

⑧ 표시광고감시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및 이
행 확인

2. 표시 · 광고에 관한 실증자료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생략) ② 카르텔조사국에 <u>제조카르텔조사과 · 입찰담합조사과 · 국제카르텔조사과 · 경제분석과</u> 및 <u>서비스카르텔조사팀</u>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u>보하고</u>,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u>보한다</u>. ③ ~ ⑤ (생략) ⑥ <u>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u> 2. <u>경쟁제한적 법령 ·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u> 3. <u>국내외 주요 산업 · 시장의 경제분석</u> 4. <u>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 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u> 5. <u>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 · 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 · 개정 시 경제분석과 평가</u>	<u>의 제출 요청 · 공개 및 임시 중지명령제의 운용</u>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조카르텔조사과 · 입찰담합조사과 · 국제카르텔조사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과를</u> ----- ----- -- <u>보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6. <u>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u> 7. <u>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u> 8. <u>주요 산업·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u> ⑦ <u>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3. (생략)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생략) ② 기업집단감시국에 <u>기업집단관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u>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u>서기관</u>으로 보한다. ③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대기업집단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u>	⑦ <u>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u>-----.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기업집단관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u>을 ----- <u>서기관</u>으로, <u>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u>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보험회사·공익법인의 의결</u>
---	--

	<u>권 행사 현황 등에 관한 정보</u> <u>공개 제도 운영</u>
<u>6. 대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u> <u>의 운영·관리</u>	<u><삭 제></u>
<u>7.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u> <u>집·분석·관리 및 관련 지표</u> <u>의 개발</u>	<u><삭 제></u>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u>12.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u> <u>추진</u>	<u><삭 제></u>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④ 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7.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u> <u>표권 사용거래 현황 등에 대</u> <u>한 정보공개</u>	<u><삭 제></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⑦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다</u> <u>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지</u> <u>배구조·내부거래 현황 등에</u> <u>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u>
	<u>2. 대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u> <u>의 운영·관리</u>
	<u>3.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u>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생략)

②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하도
급조사과·기술유통조사과·유
통대리점조사과·기업결합과·
국제기업결합과·가맹거래조사
팀 및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두
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가맹거래조사팀장 및 신산업하
도급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집·분석·관리 및 관련 지표
의 개발

4. 지주회사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5. 대기업집단·지주회사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
사항의 발굴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
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가맹유통심의
관으로 하며, 가맹유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가맹유통심의관은 「공정거
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호(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거래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
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
하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신 설>

③·④ (생략)

⑤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반사항의 발굴
4. 대규모유통업·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보좌한다.

④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하도급조사과·기술유통조사과·신산업하도급조사과·기업결합과·국제기업결합과·가맹거래조사과·유통거래조사과 및 대리점거래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⑪ 유통거래조사과장-----

1.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규모유통업 -----

4. 대규모유통업 -----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⑥·⑦ (생략)

⑧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신설>

⑨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⑩ 가맹거래조사과장-----
-----.

1. ~ 4. (현행과 같음)

⑫ 대리점거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리점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
행 확인

3. 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
사 자료 분석을 통한 법령 위
반사항의 발굴

4. 대리점사업거래 서면실태조
사 자료 분석을 통해 발굴된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시정
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⑦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

(4급 또는 5급 1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4명(6급 6명, 7급 8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3명(3급 또는 4급 5명,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총리령 제1532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가맹거래조사팀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존속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가맹거래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경
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명(5
급 6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1명(6급 9명, 7급 12명), 기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0명(3
급 또는 4급 5명, 4급 2명, 5급 1
0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532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
칙

<삭 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맹거래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분장한다.

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은 2026년 4월 1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총리령 제170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삭 제>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은 2026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주사 5명으로 본다.

총리령 제188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전자거래감시팀 및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전자거래감시팀장 및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

한 직급의 존속기한)

----- 2028년 5월 27일
-----, 2028년 5월 28일

-----.

총리령 제188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삭 제>

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전자거래
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
식산업감시과장이, 신산업하도
급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하도급조사과장이 각각 분장한
다.

신 · 구 정원 대비표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84</u>	• <u>599</u>	+115
일반직 계	• <u>481</u>	• <u>596</u>	+115
고위공무원단	• <u>12</u>	• <u>13</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31</u>	• <u>38</u>	+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43</u>	<u>47</u>	+4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175</u>	<u>234</u>	+59

행정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사서주사 · 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30</u>	<u>162</u>	+32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43</u>	<u>55</u>	+12
·	·	·	
·	·	·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84</u>	• <u>599</u>	+115
•	•	•	
•	•	•	
일반직 계	<u>481</u>	<u>596</u>	+115
고위공무원단	<u>12</u>	<u>13</u>	+1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1</u>	<u>38</u>	+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43</u>	<u>47</u>	+4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182</u>	<u>241</u>	+59

행정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사서주사 · 운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23</u>	<u>155</u>	+32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43</u>	<u>55</u>	+12
·	·	·	
·	·	·	